

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

납부고지서 재증

(2쪽)

세액 산출근거

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(과세연도:)			
구분	주 택	종합합산토지	별도합산토지
공시가격 합계			
공 제 금 액			
공정시장가액비율			
과 세 표 준			
세 율			
종 합 부 동 산 세 액			
공 제 합 재 산 세 액			
세 액 공 제		해당없음	해당없음
세부담상환과액경감			
결 정 세 액	①	②	③
구분	종합부동산세(①+②+③)	농어촌특별세	
결정세액 합계(④)		과세표준(④+⑤)	
이자상당가산액(⑤)		세 율	
가 산 세 액		산 출 세 액	
기 납 부 세 액		가 산 세 액	
차 감 고 지 세 액		기 납 부 세 액	
		차감고지세액	
아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			
가상계좌(23:00 까지 납부 가능합니다.)	유효기간	(예약이체불가)	
국세계좌	기업		
KEB 하나은행	신한		
국민	우리		
이 납부고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☎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			

가산세 등 산출근거

이자상당가산액 및 가산세액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.			
구분	대상금액	세율	세액

과세대상물건

구분	물건소재지	공시가격

종합부동산세 체납액 안내(농어촌특별세 포함)

귀하의 년 월 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은 건, 원입니다.

(3쪽)

납부고지서 검 영수증 (납세자용)

납부번호	분류기호	납부연월	결정구분	세목	발행번호
성명(상호)				수입징수관 계좌번호	
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· 등기용 등록번호)		회계연도		일반 회계	재정 경제부 소관
주소(사업장)		과세기간		조 세	
납부기한		년 월 일 까지			
종합부동산세액(①)					
농어촌특별세액(②)					
납부금액(①+②)					
납기경과 . . .		계			
납기 후 납부시 우체<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>을 참고하여 기재					
납기경과 . . .		납부할 금액			

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(수납) 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)

년 월 일

세무서장 (인)

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.
년 월 일
은 행 우체국 등
(수납인)

납부서 (수납기관용)

납부번호	분류기호	납부연월	결정구분	세목	발행번호
성명(상호)				수입징수관 계좌번호	
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· 등기용 등록번호)		회계연도		일반 회계	재정 경제부 소관
납부기한		년 월 일 까지			
금 액 (종합부동산세+농어촌특별세)					
납기경과 . . .					
납기 후 납부 시 아래 <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>을 참고하여 기재					
납기경과 . . .					
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					
납부일자별	납부할 금액	납부일자별	납부할 금액		

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은 행 우체국 등
(수납인)

안 내 말 씀

-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(수납)대리점인 은행,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※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, 초과납부한 국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.
 -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·ARS·ATM과 국세청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,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(☞ 아래의 '전자납부 이용방법' 참조).
※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자고지서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.
전자고지 시 휴대폰 문자·이메일로 안내해드리며, 우편송달은 되지 않습니다.
 - 가산세 구분란은 「국세기본법」에 따른 무신고가산세, 납부지연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,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.
 -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(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, 30일 내 처리)을 거쳐 심사청구(국세청, 90일 내 처리) 또는 심판청구(조세심판원, 90일 내 처리)를 하거나,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※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[납세자권익24>납세자권익보호 소개>납세자권리구제 제도>불복]를 참고하거나,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,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(5쪽에서 계속)

(5쪽)

-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: 납부기한이 지나면 3%의 가산금이 가산되고,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.75%의 가산금이 추가(6개월까지)됩니다.
 -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: 납부기한이 지나면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,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.022%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(5년간) 됩니다.
 -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 도래분: 납부기한이 지나면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,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.67%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(5년간)됩니다.
 -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,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「국세징수법」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.
 -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하려면 다음과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 -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(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:100만원) 이상: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거나, 납부서에 기재된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여 납부할 금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 -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(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:100만원) 미만: 송달받은 당초 납부고지서로 언제든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
 -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 -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- [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할 금액(예시)]
- ◎ 세목별 고지세액 150만원(가산세 20만원 포함)을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하는 경우
-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 도래분(가산세 대상금액 130만원)
- |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1일후~1개월까지 | 1,539,000 | 2개월후~3개월까지 | 1,556,420 |
| 1개월후~2개월까지 | 1,547,710 | 3개월후~4개월까지 | 1,565,130 |
- 2020년 이후 2026년 6월 30일 이전 지정납부기한 경과분(가산세 대상금액 130만원)
- | 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
| 1일후 | 1,539,280 | 11일후 | 1,542,080 | 21일후 | 1,544,880 |
| 2일후 | 1,539,560 | 12일후 | 1,542,360 | 22일후 | 1,545,160 |
| 3일후 | 1,539,840 | 13일후 | 1,542,640 | 23일후 | 1,545,440 |
| 4일후 | 1,540,120 | 14일후 | 1,542,920 | 24일후 | 1,545,720 |
| 5일후 | 1,540,400 | 15일후 | 1,543,200 | 25일후 | 1,546,000 |
| 6일후 | 1,540,680 | 16일후 | 1,543,480 | 26일후 | 1,546,280 |
| 7일후 | 1,540,960 | 17일후 | 1,543,760 | 27일후 | 1,546,560 |
| 8일후 | 1,541,240 | 18일후 | 1,544,040 | 28일후 | 1,546,840 |
| 9일후 | 1,541,520 | 19일후 | 1,544,320 | 29일후 | 1,547,120 |
| 10일후 | 1,541,800 | 20일후 | 1,544,600 | 30일후 | 1,547,400 |
-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(가산금 대상금액 100만원)
- |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1일후~1개월까지 | 1,030,000 | 2개월후~3개월까지 | 1,045,000 |
| 1개월후~2개월까지 | 1,037,500 | 3개월후~4개월까지 | 1,052,500 |
- ◎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은 고지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됩니다.
- ◎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(가산금)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(6쪽)

◆ 전자납부 이용방법

- ◎ 인터넷뱅킹: [금융기관 홈페이지]접속 ⇒ [인터넷뱅킹, 온라인서비스, 국세납부 등] 선택
※ 납부 가능 시간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◎ ARS 납부: [거래은행의 ARS전화] 접속 ⇒ [국세납부 등] 선택 ⇒ 안내에 따라 납부
- ◎ ATM 납부: [거래은행의 ATM기] 이용 ⇒ [국세납부 등] 선택 ⇒ [납부번호입력] ⇒ [납부]
- ◎ 홈택스(홈택스 앱 포함)(www.hometax.go.kr)나 인터넷지로(www.giro.or.kr)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(납부가능시간 ⇒ 07:00~23:30)

국세납부 →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→ 공동인증서 확인 →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,
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→ 납부하기 →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→ 납부확인 →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

※ 신용·체크카드 납부는 홈택스, 카드로텍스(www.cardrotax.kr), 은행CD/ATM기,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,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. 수수료(신용카드 0.4%~0.8%, 체크카드 0.15%~0.5%)는 납세자 부담입니다.

※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.